

공영규정의 개요

1. 이용대상

재가 서비스 이용대상	-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- 65세 미만 노인성질환(치매, 뇌졸중, 파킨슨 등)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-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------------	--

2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이용료	-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률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%,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%, 6%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.
-----	---

재가 서비스							표준 수가		(2024년)								
- 월 본인한도액(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) - (원)																	
등급		1등급		2등급		3등급		4등급		5등급							
한도액(원)		2,069,900		1,869,600		1,455,800		1,341,800		1,151,600							
-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- (원)																	
계급		30분		60분		90분		120분		150분		180분		210분		240분	
시간		이상		이상		이상		이상		이상		이상		이상		이상	
수가		16,630		24,120		32,510		41,380		48,250		54,320		60,530		66,770	

보험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	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 부담 이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-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가 (이) 전액 부담한다.
-------------------	--

3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서비스의 내용	-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자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수급자나 신원인수인의 복귀사정을 고려하여 필요 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공한다.
서비스 제공 룰가 영역	-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,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,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장기요양보험법상(제28조의2) 금지되어 있음.
비용의 부담	-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,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